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제4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신 설>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신설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안)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개정안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762호)¹⁾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동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20%와 같은 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하되²⁾, 같은 법 제4조에서는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이에 따른 관련법인 이 법의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및 이자소득세가 감면됨에 불구하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됨에 따라 감면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와 같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이하 생략)

□ 다만, 개정안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제도의 신설 여부에 따라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8